

심사보고서

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22
----------	-----

2023. 10. 18.(수)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3년 10월 4일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4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10월 16일

(제41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홍만표)

가. 제안이유

○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대상기관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- 출연목적 및 필요성
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장학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
 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함
- 출연 예정금액: 180,000천원
- 출연내역: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
- 기대효과
 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 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박영균)

가. 출연계획안의 개요

- 본 출연계획안은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음

나. 출연의 타당성 검토

- 금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출연금은 1억 8천만원으로 농협은행이

지난 2022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됨에 따라 금고 약정 협력 사업비로 2022년부터 4년간 지원하는 금액 7억 1천 9백만원 중 일부임

[2022년~2025년 약정현황]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계
출연금*	179,000	180,000	180,000	180,000	719,000

[사업기간 및 출연액]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출연연도	사업기간	출연액	비고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2024년	2024. 1. ~ 12.	180,000	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설립 근거를 두고, 「민법」 및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무관청이 허가를 받은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됨
- 출연 재원은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로 책정된 금액 7억 1천 9백만원이며,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분할하여 매년 충청북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하여 재단으로 출연하고 장학금 등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임

□ 사업현황

-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-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
-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-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-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
-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
-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□ 2023년 장학금 지급 계획

(단위: 명, 천원)

장학금명	사업부서	선발인원	1인당 지급단가	지급액
충북학생 미래핵심인재 장학금	중등교육과	57	1,000	57,000
충북학생 스타트-업 장학금	중등교육과	83	1,000	83,000
충북학생 호도대상 장학금	인성시민과	8	1,200	9,600
충북청소년 아트-비전 장학금	창의특수교육과	30	2,400	72,000
계		178		221,600

다. 종합 검토 의견

- 본 계획안은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에 해당되며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업의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 됨
- 다만, 당초 금고 약정에 따른 운영비의 출연금 전환 이외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조직, 인원을 갖추는 등 당초 재단 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 수립과 법인, 단체, 개인의 기부금 증대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
 - 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 관 부 서	재정복지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학생복지팀	한명수	강민지	김현미	290-2576

기 관 명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							
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반현황 (소재지)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(주요사업)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금 조성·관리사업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 등 ○ 이사장: 최지현 							
출 연 사 업 비	○ 2024년							
	- 출연 예정금액: 180,000천원							
	-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천원)							
	구분	2023년 예산액	2024년 예산액	재원별				
				계	국 고	특 교	도교육청	기 타 *
	계	180,000	180,000	180,000	0	0	0	180,000
	* 기타: 농협은행과의 금고약정에 따른 교육금고지원 협력사업비							
출 연 필 요 성	○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 필요							
근거·법령	○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※ 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		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총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고 있으며, 출연금 재원은 충북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함 ○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,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연기관 현황(기관연혁, 인원 및 조직현황 등) 3. 출연사업계획서 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(경영평가) 해당없음
- (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) 해당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금회 상정 의안인 「2024년도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」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함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은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에 근거하고 있으며, 재원은 충청북도교육청과 농협은행과의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로 2021년 금고 약정에 따라 4년간 총 719,000천원의 협력사업비가 예정되어 있음

* 향후 4년간 협력사업비 2022년 179,000천원, 2023년 180,000천원
2024년 180,000천원, 2025년 180,000천원

-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,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원활한 장학 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 승인을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천원)

내역	2023년 예산액(최종) (C)	2024년 예산안			전년대비 증감액 (B-C)
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 (B-A)	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180,000	180,000	180,000	-	-

4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

사업목적 명확성	출연의 타당성	유중복 사성	사업방식 효율성	사업의 의성	투자대비 효과성	재원분담 적절성
여	여	부	여	여	여	여

1-② 출연 기관현황

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

설립근거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전화번호: 043-290-2576			
				홈페이지: www.cbe.go.kr			
소재지	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	법인등록번호	150122-0002411				
연혁	(설립) 2000. 12. 29.(충북교육장학재단) (설립조례 제정) 2022. 4. 8. (재단명칭 변경) 2022. 6. 17. (출연기관 고시) 2022. 9. 19.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'23.10. 현원기준)	계		상근	비상근			
	13명		0명	13명			
입원 ('23.10. 기준)	직책	성명	주요경력	임기			
	이사장	최지현	충청대학교 초빙교수	2023.4.4.~2027.4.3.			
	상임이사	천범산	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	재임기간			
	이사	주병호	충청북도교육청 기획국장	재임기간			
	이사	오영록	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	재임기간			
	이사	홍만표	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장	재임기간			
	이사	한명수	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장	재임기간			
	이사	경준용	아하정보시스템 대표	2023.4.4.~2027.4.3.			
	이사	곽영신	I키움어린이집 보육교사	2023.4.4.~2027.4.3.			
	이사	이규호	(주)충북프리벨 센터장	2023.4.4.~2027.4.3.			
	이사	정상운	농업 종사	2023.4.4.~2027.4.3.			
	이사	장우천	한국지방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/팀장	2023.4.4.~2027.4.3.			
	감사	노재경	충청북도교육청 예산과장	재임기간			
감사	이재명	(주)고운뜰 대표	2023.4.4.~2025.4.3.				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목적: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 ○ 주요사업: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						
자본금(출자기관) 또는 기본재산(출연기관)	2,107백만원 (직전연도말 기준)			교육비특별회계 출자·출연액/지분			
				2,069백만원 / 98%			
최근 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21	2022	2023	재무현황 (백만원) '22.12.31.기준	자산	2,346 (자산 총액)
	예산액	379	383	456		부채	0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	150	179	180		자본	2,346 (자본금 총액)
2022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212			203		9	

1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	구분	출자	
주관부서	재정복지과		출연	180,000천원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충북 도내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: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

- 사업기간 및 출연액 (단위: 천원)

사업명	출연연도	사업기간	출연액	비고
재단법인 충북교육 성장지원재단 출연	2024년	2024. 1. ~ 12.	180,000	

- 주요내용: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*

*사업비: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,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,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,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,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,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출연근거: 「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출연금)

□ 연도별 지원내역(충청북도교육청 금고 약정사항)

- 최근 4년간(2018년~2021년) 지원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2018	2019	2020	2021	계
운영비*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600,000

*운영비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/ 충북교육장학재단지원(운영비)

- 2022년~2025년 약정현황

(단위: 천원)

구분	2022	2023	2024	2025	계
출연금*	179,000	180,000	180,000	180,000	719,000

*출연금: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/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출연(출연금)

□ 기대효과

- 충북 도내 우수학생 조기발굴 및 성장 지원
- 다양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실현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(재)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2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도내 학생들에게 지원하여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, 출연기관 고시와 정관 변경을 통한 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수 학생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음
- 재단의 주요 수입인 출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재단 목적사업 수행의 어려움과 장학사업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설립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3조(사업)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
2. 장학금 조성·관리 사업
3.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
4. 국제교류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
5. 저소득층학생 지원 사업
6.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·위탁하는 사업
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8조(출연금) 교육감은 재단의 목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